

□ 질문의원 : 김덕균

○ 한전에서 무분별하게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설치하여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한전측과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답 변)

- 전신주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규정에 의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 50% 감면대상임(600원 → 300원).

※ 2005년 전신주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신주 (개소)	점용료 부과액	비고
계	16,908	5	
원미구	5,685	2	
소사구	4,637	1	
오정구	6,586	2	

- 전신주를 이용한 통신회선 설치는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한전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통신회선 사용자에게 회선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전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음
 - 통신회선 사용자 : 드림라인, 부천종합유선, 드림씨티, 파워콤, 하나로 통신, SK네트워크, 데이콤 등
 - 통신선로 허가본수 : 약 44,000본(1본은 약 40~50m)

- 한전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신주에 통신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회선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고, 안전사고 등의 예방차원에서 1개 전신주에 12조 이상의 설치는 불허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회선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한전측과 협의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통신회선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